

2026년 관세사 1차 시험 대비 개정 공지(3)

윤준필 관세사

- 기존 공지사항에 시험일 기준 반영되지 않는 개정법령 일부가 포함되어 재공지하니 본 자료로 숙지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 관세사 시험은 시험일 당일(3월14일) 시행 중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적용됨.
- 현재 발표된 개정법령은 2026년 1월 1일 또는 2026년 1월 2일 시행을 기준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모두 포함됨.

1. 공통사항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 (1)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 (2)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차관**
- (3)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령**

2. 교재 p17 → (3) 공휴일 등에 따른 기한연장(법 제8조 제3항)

-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① 토요일 및 일요일 ②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 <u>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근로자의 날</u> (이하생략)	① 토요일 및 일요일 ②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 <u>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노동절</u> (이하생략)

3. 교재 p38 → 1) 연대납세의무자(법 제19조 제5항)

-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완화(거짓 정보제공 삭제)로 납세의무 범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㉞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u>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u>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㉞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u>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u>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4. 교재 p109 → (2)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법 제42조의2)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 감면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① 법 제37조 제1항 제3호(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p> <p>② 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p>	<p>①-② (기존 동일)</p> <p><u>③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u></p> <p><u>가.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u></p> <p><u>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u></p>

5. 교재 p169 → 5.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 핵심체크(시행령 제71조의2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

- 우회덤핑 유형의 구체화 및 범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p>1.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시행령 제71조의2]</p> <p>(1) 상기 5.(1)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라 한다)를 말한다.</p> <p>(2) 덤프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p>2. 경미한 변경행위 판단시 고려요소 [시행규칙 제20조의2]</p>	<p>1.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시행령 제71조의2]</p> <p>(1) 상기 5.(1)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① 법 제51조에 따라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u>② 덤프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프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u></p> <p>(2) <u>상기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u></p>

<p>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2)에서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p> <p>①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과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p> <p>②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과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법 제84조 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p> <p>③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으로 대체가능한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의 용도</p> <p>④ 우회덤핑 조사 대상물품과 덤핑방지관세물품의 생산설비 차이</p> <p>⑤ 해당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p> <p>⑥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p>	<p><u>“경미한 변경행위 등”이라 한다</u>)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p><u>2. 경미한 변경행위 판단시 고려요소 [시행규칙 제20조의2]</u></p> <p><u>(1)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2)에서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u></p> <p>① <u>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u></p> <p>② <u>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 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u></p> <p>③ <u>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u></p> <p>④ <u>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u></p> <p>⑤ <u>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u></p> <p>⑥ <u>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2) 제3국 가공시 경미한 변경행위 해당여부 판단시 고려사항</u></p> <p>① <u>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u></p> <p>② <u>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이하 이 조에서 “단순조립가공물품”이라 한다)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u></p> <p>③ <u>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u></p> <p>④ <u>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u></p> <p>⑤ <u>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u></p> <p>⑥ <u>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	--

6. 교재 p170 → 5.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 핵심체크(시행령 제71조의3)

- 용어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p>상기 5. (1) 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u>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u> 통해 해당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p>	<p>상기 5. (1) 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 등을 통해 해당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p>

7. 교재 p173 → 3) 조사기간 연장, 5) 덤프방지관세 부과 결정기간(시행령 제71조의7)

- 기간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3) 조사기간 연장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p> <p>5) 덤프방지관세 부과 결정기간 재정경제부장관은 우회덤핑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8개월 이내에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생략)</p>	<p>3) 조사기간 연장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p> <p>5) 덤프방지관세 부과 결정기간 재정경제부장관은 우회덤핑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0개월 이내에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생략)</p>

8. 교재 p174 → (6)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협조요청(시행령 제71조의9)

- 규정 준용시 용어 및 표현 변경의 구체화

개정 전	개정 후
<p>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p>	<p>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공급자”는 “공급자(제71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는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p>

9. 교재 p267 → 1. 서울불균형물품의 면세 핵심체크(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중략)...</p> <p>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p> <p>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p>	<p>...(중략)...</p> <p>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p> <p>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p>

10-1. 교재 p268 → (3) (세울불균형 면세) 지정공장의 지정기간(법 제89조)

- 지정공장 기간연장

개정 전	개정 후
(3) 지정공장의 지정기간 지정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지정공장의 지정기간 지정공장의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0-2. 교재 p268 → (6) (세울불균형 면세) 중소기업이 아닌자에 대한 감면(법 제89조)

- 非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일몰제 기간연장

개정 전	개정 후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물품 중 <u>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u>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u>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u>				
<table border="1"> <tr> <td>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td> <td>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td> </tr> <tr> <td>100분의 100</td> <td>100분의 80</td> </tr> </table>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1. 교재 p270~272 → 1.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핵심체크(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중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⑳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㉓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중략)... ⑤ (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㉓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㉓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12. 교재 p281 → 1.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핵심체크(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개정 전	개정 후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

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 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 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	---

13. 교재 p327 → 3.(2) 중복조사 금지(법 제111조 제2항)

- 중복조사 금지대상 명확화

개정 전	개정 후
<p>세관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p>	<p>세관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 [제1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p>

14. 교재 p329 → 6.(1)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법 제114조 제1항)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세관공무원은 법 제110조 제2항(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 제2호 전단과 제132조 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15. 교재 p329 → 6.(1)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법 제114조 제1항)

- 관세조사 사전통지 예외대상 및 변경조사시 통지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2) 관세조사의 연기신청</p> <p>(3)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재사항(시행령 제139조)</p> <p>(4) 조사기간(시행령 제139조의2)</p>	<p>(2) 조사개시 당일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항 제2호(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p> <p>(3) 변경사유 통지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상기(2)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4) 관세조사의 연기신청</p> <p>(5)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재사항(시행령 제139조)</p> <p>(6) 조사기간(시행령 제139조의2)</p>

16. 교재 p334 → 9. 비밀유지 (1) 목적 외 과세정보 제공 금지 및 예외사항(법 제116조)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④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p>	<p>④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p>

17. 교재 p403 → 6.(1)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요청(법 제137조의2)

- 관세법 타 조항 및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② 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p> <p>㉠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p> <p>㉡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 및 석궁</p>	<p>② 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p> <p>㉠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 등</p> <p>㉡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 및 석궁</p>

18. 교재 p482 → 5.(1) 제품과세(법 제188조 제1항)

- 제품과세 혼용승인 대상 및 시기 명확화

개정 전	개정 후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19. 교재 p482 → 4.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핵심체크(시행령 제203조 제5항)

- 기간변경

개정 전	개정 후
5.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5.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0. 교재 p483 → 6.(1) 원료과세(법 제189조 제1항)

- 원료과세 신청시기와 적용시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법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과세물건 확정시기)에도 불구하고 법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과세물건 확정시기)에도 불구하고 법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1. 교재 p505 → 9.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2)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시행령 제 192조의10 제2항)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중략)... 2.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	...(중략)... 2.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

22. 교재 p547 → 4.(3) 신고승인 운송수단의 불변(법 제216조 제3항)

- 관세청장 고시 제정에 따른 규정 구체화

개정 전	개정 후
<u>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u>	<u>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u>

23. 교재 p584 → 2.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법 제234조의2)

- 용어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u>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u>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u>

24. 교재 p597 → 2.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핵심체크(시행규칙 제77조의4)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중략)...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중략)...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25. 교재 p625 → 4. (3)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법 제254조의2 제3항)

- 탁송품운송업자의 국내 배송업자에게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 위탁 가능 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탁송품 운송업자는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 수신인의 주소지(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탁송품 운송업자는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 수신인의 주소지(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26. 교재 p662 → 12.(1)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법 제264조의10 제1항)

- 정보제공 기관 및 정보범위의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p>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①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p> <p>② 상기 ①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p>	<p>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①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p> <p>②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p> <p>③ 상기 ① 및 ②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p>

27. 교재 p662 → 13.(1) 마약류등 관련정보의 제출요구(법 제264조의11 제1항)

• 용어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p>13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법 제264조의11]</p> <p>(1)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요구</p> <p>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①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p> <p>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p> <p>③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p>	<p>13 마약류 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법 제264조의11]</p> <p>(1)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요구</p> <p>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① 마약류 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p> <p>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p> <p>③ 마약류 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p>

28. 교재 p664 → 1.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법 제265조)

• 세관공무원의 여행자 등에 대한 신체 및 휴대품 검사·검색 권한 강화

개정 전	개정 후
<p>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p> <p>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2) 여행자 등의 휴대품 검색</p> <p>세관공무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p> <p>① 제137조의2 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p> <p>② 제206조제 1항 제2호 라목의 유치사유에</p>

	<p>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p> <p>(3) 여행자 등에 대한 신체 검색 세관공무원은 상기(2)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 등이 다음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p> <p>① 마약류등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③ 그 밖에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 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p> <p>(4)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 여성에 대하여 상기(3)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p>
--	--

29. 교재 p668 → 7. (1) 마약류 위치정보 수집(법 제266조의2 제1항)

• 용어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241조 제1항(수입신고) 및 제2항(간이신고)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 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241조 제1항(수입신고) 및 제2항(간이신고)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 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0. 교재 p735 → 4.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기관의 범위 (법 제322조의2 제2항)

• 타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중략)... 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략)... 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이상)